

# THE WEALTH GUIDE

2025 Vol.8



---

## Part.2 세무

### 가상자산 거래 유형 A to Z : 과세 실전 매뉴얼

# 가상자산 거래 유형 A to Z : 과세 실전 매뉴얼

한화생명 신은영 세무사  
eyshin@hanwha.com  
(작성일 : 2025.7.31)

\* 본 글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통틀어 '가상자산' 으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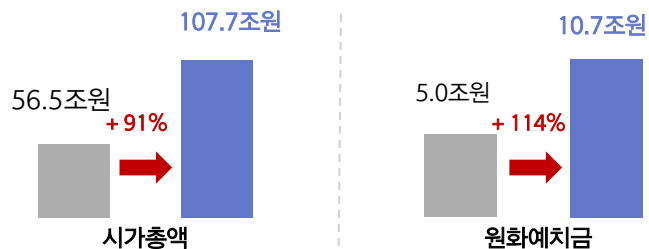
## Summary

-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가상자산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확대된 반면, 그 이면에는 세무 신고의 사각지대와 예기치 못한 과세 이슈 등 현실적인 리스크도 함께 내포되어 있음.
- 이와 같은 세무리스크로 인해 투자자들이 실제로 여러 과세 문제에 맞닥뜨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음.
- 투자자들은 가상자산 거래의 실사례와 함께, 과세관청이 어떻게 세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짚어보면서 예상치 못한 세무 리스크에 미리 대응할 수 있음.

## 가상자산 과세 현실화 ... 한계와 미래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는 빠르게 성장하는 가상자산 시장 현실을 반영해 도입 되었지만, 실제 과세 현장에서는 여전히 다양한 한계와 과제가 존재
- 예를 들어,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미등록 해외거래소, P2P직거래, 디파이(Defi) 서비스, 에어드랍 및 스테이킹 등과 같은 각종 신 유형 가상자산 거래들은 그 특성상 단순한 매매로 정의하기 어려워, 소득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이나 구체적인 과세방법 역시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고 시기와 세금 납부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 따라서,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과세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높아 다양하게 변화하는 거래 방식과 최신 세무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다양한 실사례와 최신 판례, 그리고 과세관청의 유권 해석을 꼼꼼히 살피어 세무 리스크에 대비해야 함.

### 2024년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 및 예치금 추이



\* 자료: 금융정보분석원

## ① 가상자산 상속

### :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평균가액으로 재산평가

- 피상속인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법상 예외 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됨. 이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가상자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즉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해야 함.
- 여기서 객관적인 평가기준이라 함은 국세청이 고시한 거래소(업비트, 빙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5개 거래소)의 해당 가상자산 '일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상속개시일 전후 1개월간 총 2개월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값을 의미함.
- 한편, 상속인은 거래소별 시세를 일일이 직접 확인할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 내 '가상자산 일평균가액 조회' 메뉴를 통해 일별 평균 시가를 확인할 수 있음.

### [사례1] 가상자산 상속재산 평가방법

▶ A씨는 비트코인 10개를 국내 5대 거래소 중 한 곳에 보유하고 있으며, 2025년 8월 1일 갑작스럽게 사망

- 상속개시일 : 2025년 8월 1일
- 상속재산평가기간 : 2025년 7월 1일~2025년 9월 1일(총 2개월)
- 각 거래소별 일평균가액 산출: 국세청 홈택스 일별 평균 시가 기준, 2개월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EX. 1BTC=1천만원)
- 상속재산 평가액 계산 : 10BTC X 1천만원 = 1억원

## ② 가상자산 증여

### : 부자(父子)간 전자지갑을 통한 이전



- **콜드월렛(Cold Wallet)**을 활용해 부모와 자녀 간의 지갑 주소만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수증자인 자녀에게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
- 한편,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가상자산의 '개인키(Private Key)'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오프라인 지갑으로 콜드월렛 주소 자체는 익명성이 보장되고, **별도의 신원 정보가 블록체인에 남지 않음**.
- 즉, 거래내역은 모두 공개되지만, 어떤 주소가 누구(특정인)소유인지 명확하게 식별하기가 불가능하므로 거래소 계정간 이전과 달리 **콜드월렛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과세추적의 한계가 있음**.
- 결국 부모와 자녀가 콜드월렛 등 외부 지갑을 통해 별도 신고 없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과세추적 및 과세집행의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적인 **콜드월렛**(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하드웨어 월렛, 오프라인지갑)은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자산 파악과 과세 집행에 현실적인 제약이 따름.
- 추후, 가상자산이 거래소를 통해 입금되거나 현금화되는 순간에는 세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 ③ 가상자산 양도

### : 연250만원 초과 양도차익은 분리과세·직접 신고납부

- **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이익** 발생시, 그 소득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대상이 됨. 가상자산을 양도할 때의 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되 이렇게 계산된 **양도차익 중 250만원이 기본공제로 차감**되어, **그 초과분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됨.
- 여기서 투자자는 가상자산의 소득만 별도로 분리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으며**, 투자자 본인이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와 세금 납부**를 다음 해 5월1일~ 31일까지 책임지고 **직접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구분	내용
기타소득과세표준	연간 전체 양도차익- 필요경비(실질 취득가액, 거래수수료 등) -250만원(연간 기본공제금액)
세율	22%(단일세율)
과세형태	기타소득 분리과세(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신고납부기한	투자자가 직접 다음해 5월1일~31일까지 신고납부무의

#### [사례2] 가상자산 양도시 기타소득세 계산

▶ A씨는 4천만원에 구입한 비트코인을 7천만원에 매도하고 거래수수료로 50만원 발생함.

- ① 기타소득금액 : 70,000,000원 - 40,000,000원 - 500,000원 = 29,500,000원
- ② 기타소득과세표준 : 29,500,000 - 2,500,000원 = 27,000,000원
- ③ 기타소득세 : 27,000,000 × 22% = 5,940,000원

## 가상자산 수차례 매수 후 양도, 총평균법으로 취득가액 산정

-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한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총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
- 즉,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한 가상자산의 전체 취득가액을 총 매수수량으로 나누어 1단위당 평균 취득가액을 구하고, 이를 토대로 양도하는 수량에 맞춰 취득가액을 산출하는 방식

### [사례3] 가상자산 교환의 기타소득세 계산

▶ A씨는 비트코인을 3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매수함.

거래일	매수수량(개)	매수단가(만원)	매수총액(원)
1월 28일	0.5	4,000	2,000만원
3월31일	0.3	5,000	1,500만원
5월20일	0.2	6,000	1,200만원
총매수가액			4,700만원

- ① 총 매수수량 : 0.5개 + 0.3개 + 0.2개 = 1.0개
- ② 총 취득가액 : 2000만원+1,500만원+1,200만원 = 4,700만원
- ③ 총 평균 취득단가 : 총 취득가액/총 매수수량 = 4,700만원/1.0개 = 4,700만원/개
- ④ 양도한 코인의 취득가액 : 양도수량(1.0개)X평균 취득단가(4,700만원)= 4,700만원

## ④ 가상자산 교환

- 가상자산을 서로 교환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대상으로 봄.
- 가상자산 교환 이익이라 함은 취득한 새로운 가상자산의 시가인 양도가액에서 교환된 기존 보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간 250만원 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 기타소득세로 부과함.  
\* 기타소득금액 = 교환을 통해 새로 취득한 가상자산의 시가 - 기존 보유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 가상자산 교환으로 얻은 이익 역시 다른 가상자산 소득과 마찬가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가상자산 소득을 분리하여 다음해 5월1일~31일까지 투자자가 직접 신고 납부해야 함.

### [사례4] 가상자산 교환의 기타소득세 계산

▶ A씨는 보유한 비트코인 1개를 이더리움 30개와 교환함.

- ① 비트코인 취득가액 : 30,000,000원
- ② 교환일 기준 이더리움 30개의 시가 : 60,000,000원
- ③ 교환차익 : 6천만원(수취한 이더리움 시가) - 3천만원(비트코인 취득가) = 3천만원
- ④ 기타소득과세표준 : 30,000,000원 - 2,500,000원 = 27,500,000원
- ⑤ 기타소득세 : 27,500,000원X22% = 6,050,000원

## ⑤ 가상자산 대여(Lending), 예치(Deposit) & 스테이킹(Staking)

- **가상자산 예치**는 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을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일정기간 맡기고, 이에 대한 이자를 받거나**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기타 혜택을 얻는 행위를 말함.
- 즉, 가상자산 예치를 통해 받는 이자는 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혜택이므로 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대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로 과세
- **가상자산 스테이킹**은 투자자가 자신의 가상자산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보상 받는(리워드)구조**로, 세법에 따라 스테이킹으로 얻은 리워드 또한 대여 또는 유사한 거래로 인한 경제적 이익으로 간주하여 기타소득세로 과세



## 예치(Deposit) & 스테이킹(Staking) 과세 시점의 차이

- 가상자산 예치와 가상자산 스테이킹 모두 보유 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얻는 방식이지만 과세 시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 **가상자산 예치**의 과세시점은 이자가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이나, **가상자산 스테이킹**의 경우 최근 국세청 방침에 따라 리워드로 얻은 가상자산을 **실제로 양도 또는 대여를 통해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점에 입각하여 스테이킹 보상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실제 매도까지는 과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사례5] 가상자산 예치의 기타소득세 계산 및 과세시점

- ▶ A씨는 비트코인 2개를 한 국내 거래소에 예치 상품으로 1년간 맡기고, 예치 기간동안 총 300만원 상당의 이자 수익에 대해 지급받음.

- ① 기타소득금액 : 3,000,000원
- ② 기타소득과세표준 : 3,000,000원-2,500,000원= 500,000원
- ③ 기타소득세 : 500,000원 X22% = 110,000원
- ④ 과세시점 : 투자자가 이자수령 받을 때

### [사례6] 가상자산 스테이킹의 기타소득세 계산 및 과세시점

- ▶ A씨는 2025년에 이더리움 10개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스테이킹하고, 스테이킹 리워드로 1ETH(가치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2027년에 시가 500만원에 매도할 예정

- ① 기타소득금액 : 5,000,000원-2,000,000원=3,000,000원
- ② 기타소득과세표준 : 3,000,000원-2,500,000원=500,000원
- ③ 기타소득세 : 500,000원X22%= 110,000원
- ④ 과세시점 : 투자자가 리워드로 받은 코인을 매도할 때

## ⑥ 가상자산 에어드랍(Airdrop)

- **에어드랍(Airdrop)**이란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한 사용자(기존 토큰 보유자, 특정 활동 참여자 등)에게 새롭게 발행되는 **가상자산을 무료로 무상 배포하는 이벤트**를 말함.
- 현행 소득세법은 경품·사례금 등 무상으로 지급되는 현물을 지급할 때 지급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므로 가상자산 에어드랍 또한 수령자가 직접 현금화를 하지 않더라도, 무상으로 지급되는 가상자산 현물에 대해 시가 상당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함**.
- 즉, 별도의 금전 지급이나 거래가 없더라도 프로젝트 측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유저의 지갑으로 무료로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경우는 세법상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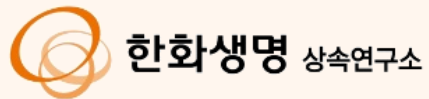
### [사례기] 가상자산 에어드랍의 기타소득세 계산 및 과세시점

▶ A씨는 특정 블록체인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에어드랍 이벤트에 참여해 2,000개 가상자산을 무상으로 지급 받음.

- ① 지급받은 당시 가상자산 시가 : 개당 2,000원
- ② 기타소득금액 : 4,000,000원
- ③ 기타소득과세표준 : 4,000,000원 - 2,500,000원 = 1,500,000원
- ④ 기타소득세 : 1,500,000원 X 22% = 330,000원
- ⑤ 과세시점 : 에어드랍 가상자산 지급받을 때

## 해외가상자산거래소 국세청 과세추적 한계

- **가상자산의 해외 출금이 늘어나고** 있지만, 과세당국이 이러한 자금 이동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거나 과세까지 이어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첫째,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거래 자체는 투명하게 기록되지만 **실 소유자 신원이 공개되지 않아** 정보 접근에 한계. 특히,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외부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송금 받는 지갑 주소의 실 소유주, 수취 국가, 현지거래 상황 등을 **세무당국이 독자적으로 확인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움**.
- 둘째, 해외 거래소나 디파이(DeFi)플랫폼, P2P거래 등 탈중앙화된 거래 방식이 증가하면서 당국이 일일이 추적하거나 자금 흐름 전체를 통합적으로 관리·감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또한 한계**
- 셋째, **현행 법령 및 국제 공조체계의 미비**로 국내 과세관청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나 출금내역을 직접 조회하거나 과세 자료로 활용하기 쉽지 않음.
- 이러한 한계와 기술·제도적 장벽 등으로 현재로서는 가상자산의 해외 출금 관련 실질적 과세 추적이 어렵지만,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는 해외거래소를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관련 내역·입증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필수안내사항

- 본 자료는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 되었습니다.
- 본 자료는 한화생명보험(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한화생명보험(주)가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일반금융소비자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식재산권은 한화생명보험(주)에 있으므로 한화생명보험(주)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